제306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2022. 3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 김용연·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지금부터『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,
-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

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입니다.

□ **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○ 먼저, (안 제2조)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명 증원하였습니다.

-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일반직 정원을 9명 증원하였으며,
-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8명 증원하였습니다.

○ 다음은 (안 제3조 관련 별표3)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일반직은 5급 이하 소계 정원을 9명 증원하였으며,
- 특정직은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정원을 8명 증원하였습니다.

□ **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**

감사합니다.